

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(추가)공고

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정체성 회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「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(추가)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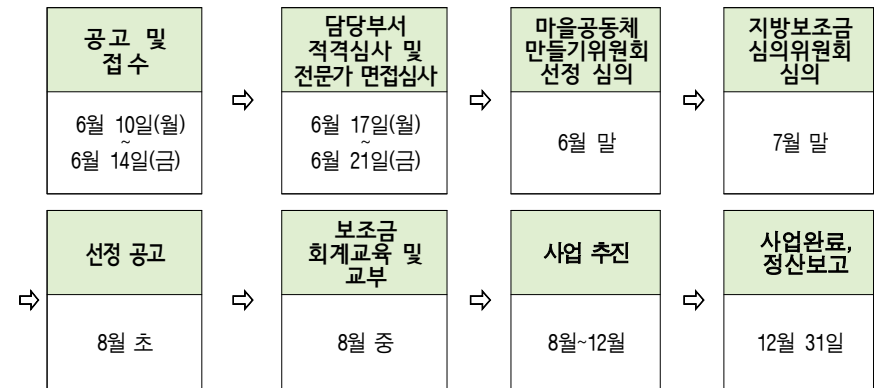
인 천 광 역 시 장

1 사업개요

< 공 모 분 야 >

- 유형 1. 권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(권역당 1개)
- 유형 2. 중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 형성 지원사업

- 사 업 명 :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4. 6. 10.(월) ~ 6. 14(금) 18:00
- 사업추진기간 : 2024. 8. ~ 12.(5개월)
- 추진목적
 -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권역별 공동체 교류 활성화
 - 중년 1인가구 대상 사업추진을 통한 공동체의 사회이슈 해결역량 증대
- 총사업비 : 40,000천원
- 신청방법
 - 사업신청 :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⇨ [☞사업신청 확인](#)
- 사업추진절차



2 [공모-1]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

- 추진목적 : 군·구별 마을공동체 간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권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기반 조성
- 사업지역 : 기초권역(군·구) 내
- 참여대상 : 마을공동체 대표 및 활동가 등의 연합 네트워크 (개별공동체 지원불가)
- 사업내용
 - 마을공동체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가 모임 지원
 - 권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
- 신청자격
 - **강화군, 옹진군, 중구, 계양구** 내 각기 다른 마을공동체 대표, 활동가 등 **최소 5인 이상**의 모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(구성원 활동이력 제출)
 - 동일 공동체 구성원의 복수 참여는 가능하나, 동일공동체 인원만으로 사업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원불가
 - 최소 5개 이상의 각기 다른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어야 함
 - 다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중복참여 가능
 - 다수 공동체 모임의 경우, ‘대표공동체’를 지정하여 사업신청 (사업신청서 양식 확인)
- 선정시 마을공동체 교류 행사 ‘네트워크 성과 공유회’ 예산 수립 (전체예산 10%) 및 월례회의 참여 필수
- 지원규모 : 네트워크 당 최대 700만원(군·구당 최대 1개)

3 [공모-2] 중년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

- 추진배경
 - 다양한 원인을 통해 증가되는 ‘중년 1인가구’에 대한 사회이슈 부각
 - 주거 다양성, 가족 다양성, 지역사회 복원에 마을공동체 역할의 중요성 부상
- 추진방향
 - 마을공동체가 지역 내 ‘중년 1인가구’ 현황 파악 후, 대상자들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, 운영
 - ‘중년 1인가구’ 당사자들의 공동체 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적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
- 사업대상
 - 「7인이상 ‘중년(40~65세) 1인가구’」를 지원할 역량을 갖춘 마을공동체
- 사업내용
 - 중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
- 신청자격
 - 지역현황 사전 파악을 통해 중년 1인가구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(실행계획서 제출시까지 7인의 중년 1인가구 대상자 모집 필수)
 - 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(사회이슈 해결형 배려)
- 지원규모 : 1개 사업당 최대 600만원

4 선정 제외대상

- 본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내용이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단순 취미활동, 동호회 활동, 일회성 축제(2개월 내외 단기 준비기간), 단순 캠페인, 단순 복지활동(소외계층에 대한 일방적 물품 전달 등), 단순 교육강좌, 단순 반복 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계가 적은 사업신청의 경우
- 본 공모사업 취지와는 달리 기존 단체나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- 모임 구성원의 단순 친목도모 등의 사적 목적사업의 신청일 경우
-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(모임)의 사업신청의 경우
-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 취지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

5 사업신청

□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(기획형)

- 유형 1. 권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(권역당 1개)
- 유형 2. 중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

- 접수기간 : 2024. 6. 10.(월) ~ 6. 14.(금)18:00 까지
- 접수처 :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
- 신청방법 : 이메일(maeul-project@incheonmaeul.org) 및 방문접수(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,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 1206호)
- 접수방법
 - 이메일접수: 사업신청서 ‘스캔자료’와 ‘한글문서’ 모두 송부
 - * 메일제목은 꼭 “2024 마을공동체 (추가)공모사업 -신청자 또는 공동체명”으로 작성
 - * 신청서류 송부 후 ‘접수완료 회신메일’ 확인 필수

- 제출서류 : 공모사업 신청 서식(첨부) 확인 후 해당사업별 신청서 제출

6 사업비 편성기준 (사업계획서 작성시)

○ 기본원칙

< 관련근거 >

- *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,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
- *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
- *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등
- *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

< 기본원칙 >

- *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(실질 소요예산 수립 원칙)
- * 사업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,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(산출내역이 없는 항목은 선정시 감액)
- * 직접적인 활동수행과 관련한 임직원의 활동비는 총 사업비의 15% 이내로 편성할 수 있음
- * 사업비는 모임의 마을공동체 활동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/ 식비, 강사료, 단순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/ 특히, 행사비는 본연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소규모 행사규모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
 - (유의사항) 모임에서 개최해 오던 대규모 행사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행사 비용 일부에 대해 보조금 사용은 불가함
- * 보조금은 개인 또는 모임의 재산형성에 대한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
 - 소모성 물품이 아닌 고가물품(노트북 등) 편성 불가
- * 모든 거래는 모임 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에게 지출 불가함 (물품구입, 재료구입, 강사료 등) - 여비, 활동비는 해당사항 아님

* 지원단체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확정된 보조금과 자부담은 계획 당시의 집행비율을 사업완료시 까지 유지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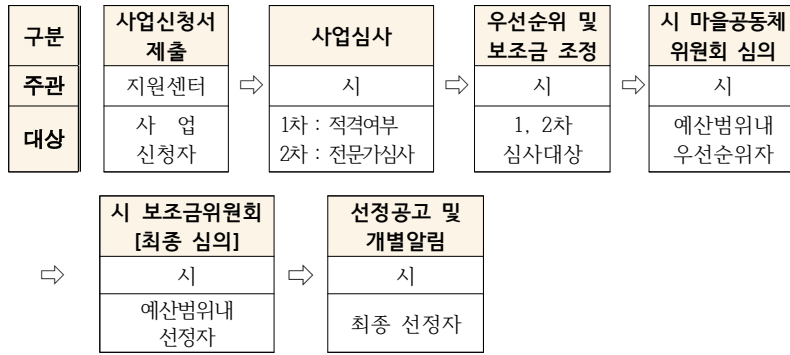
○ 지출항목별 예산편성 기준

지출항목	적용 내용 및 기준 금액
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2급 1시간 이내 : 150,000원, 2시간 이내 : 220,000원 일반3급 1시간 이내 : 100,000원, 2시간 이내 : 150,000원 보조강사 1시간 이내 : 50,000원, 2시간 이내 : 80,000원 * 강사비로만 구성된 사업 불가,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서지역(강화,옹진에 한함)의 경우 별도의 교통실비 집행 가능 * 2시간 초과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집행
원고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재, 책자 편찬용 원고 * 강의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지급단가 : A4 1매당 10,000원 / 파워포인트 1면당 5,0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씨 13포인트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 또는 1면 300단어 * 복사물, 표지, 목차, 간지 : 원고료 미지급
유급봉사자 보상 (외부단순인건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(행사 등)을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간당 10,000원 * 지급 한도액 : 50,000원 / 1인, 1일 5인 이하, 1인당 주 15시간 이하
회의 및 심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외부 전문가 수당 2시간 이내 : 70,000원 / 1인, 2시간 초과 : 100,000원 / 1인 * 지급 한도액 100,000원 / 1인 *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, 강사비와 중복지급 불가
홍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실행에 필요한 홍보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수막, 리플릿, 홍보물, 동영상 등 제작을 위한 비용 * 홍보영상 1회만 가능, 현수막은 5만원 이내 * 집행한도액 : 사업비 총액의 15% 이내
공연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연 비용 (소규모 공연초청을 원칙으로 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인이하 : 275,000원 이하(사회자는 5인이하 적용)/6인 이상 : 400,000원 이하 * 소규모 행사가 원칙이며, 외부 공연은 자제하고 지역 인적자원 활용 권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주민공연 연계시 유급봉사자로 보상 가능 * 집행한도액 : 사업비 총액의 20% 이내
단기 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을 위한 물품, 시설, 공간, 차량 등의 단기(1일 이내) 임차비용 * 집행한도액 : 사업비 총액의 30% 이내 (실비 정산)

지출항목	적용 내용 및 기준 금액
소모성 물품 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(재료) 구입 비용 사업실행에 필요한 재료 구입 비용 * 사업추진과 관련없는 사무비용, 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 집행 불가 * 자산취득성 경비집행 불가
교재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을 위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도서 및 교재 등의 구입비용 * 사업실행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단순 도서 비축(재산형성)을 위한 도서 구입 비용은 집행 불가 * 집행한도액 : (공동) 총사업비의 5% 이내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경비 *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 (문화공연, 영화, 놀이시설 등)은 집행 불가 * 집행한도액 : (공동) 총사업비의 15% 이내 / (리빙랩) 총 사업비의 10%이내
활동비 (사업추진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에 필요한 주활동 회원(임원 등)의 활동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비, 다과비, 자료구입 등 실제 지출 비용 사업실행에 필요한 예상하지 못했던 소액성 지출 필요시 사용 가능 * 집행 한도액 : 총 사업비의 15% 이내 /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불가 (리빙랩) 총 사업비의 10%이내 / (공간조성) 500,000원 이내 *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불가 * 별도의 활동비 사용 관리대장을 통한 관리 필수
숙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에 필요한 모임구성원의 타 시·도의 행사참여, 방문 등을 위한 숙박 비용 (1박 이내) * 시외 활동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할 경우 1박 까지 지출 가능 * 단순 관광개념의 숙박비 편성 불가 (공동체 탐방의 경우 반드시 교육 포함) * 집행한도액 : 최대 5만원 (1인 1박 기준)
식비 및 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에 필요한 모임구성원 또는 관계자 식비와 다과비 (회의, 행사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편성단가) 다과비 4,000원 이하/1인, 식비 8,000원 이하/1인 * 집행한도액 : 총사업비의 15% 이내 * 돌봄사업 등과 같이 사업실행에 직접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정기적으로 다과 등의 간식을 구입해야 경우에는 소모성물품 구입비용으로 편성 가능
국내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실행에 필요한 모임구성원의 타 시·도 방문 등에 필요한 경비(정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내 4시간 미만 : 10,000원/1인, 1일 (교통비 등 활동경비) - 시내 4시간 이상 : 20,000원/1인, 1일 (교통비, 식비 등 활동경비) - 시외 : 20,000원/1인, 1일 (교통비, 식비 등 활동경비) * 집행한도액 : 1회 활동당 2인 이내 집행 가능 * 여비 외 교통비, 통행료, 식비를 별도로 집행 불가 * 여행자 보험금은 자부담으로 집행

7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○ 기본 선정절차



○ 주요 심사원칙

-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병행함 [2차 심사사항은 개별 통보]
-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서류심사와 집합(면접)심사의 점수를 산정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함
- 1차 서류심사 결과 신청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자격미달(1회 서류보완 가능) 또는 상기 '4선정 제외대상'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2차 심사(집합 또는 면접) 대상에서 제외함
- 2차 심사에 불참한 신청자는 사업신청이 자동 취소되며,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-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2차 심사는 본 사업신청시 제출한 모임구성원 중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주활동 임원(총무, 회계 등)만이 심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, 미준수시 사업신청은 자동 취소됨
- 지원대상 선정 결정이후 중도포기(자진포기 또는 자격박탈 등)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최종 심사결과에

근거하여 차기 우선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함

○ 배점현황

기본 심사		
계	1차 심사	2차 심사
100점	적격여부	100점

○ 심사방법 : 1차-서류심사(적격여부) / 2차-인터뷰심사(100%)

- 1차 심사(적격여부) : 참여자격(구비서류, 입증서류 등) 확인
- 2차 심사(100%) : 1차 평가통과자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심사

○ 심사기준

- 사업의 필요성, 공익성
- 해당 지원사업과의 부합성, 예산편성의 타당성
- 각 유형별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
 - 사업계획의 구체성, 신청자의 활동 역량정도
 - 사업계획의 실현성, 지속가능성, 지역이슈와의 연계정도
- 주민참여도
 - 주민 욕구의 반영 정도, 신청주민들의 참여 가능 여부
- 사업종료 이후의 제안 목표 실현 가능성
 - 사업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, 파급성 등

8 결과 공고

- 8월 초 선정공동체별 개별 고지

9 사전 유의사항

사업 신청시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류는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함

- 서류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업신청은 자동 취소됨

나.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의 ‘예산편성기준’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

- 예산편성기준에서 벗어난 사업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후 지급함

다. 사업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한 신청자는 반드시 군·구 담당자로부터 접수확인 회신 메일을 받아야 함

라. 본 공모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‘직접’ 마을활동을 ‘계획하고 실행’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, 모임 구성원이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

- 신청모임 구성원(주민)이 아닌 외부인의 대리작성 또는 사업실행 시 사업선정은 자동 취소됨]
- 단, 마을리빙랩의 경우 ‘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’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음

마. 본 공모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습득을 하여야 하며, 그러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
바. 사업신청서 작성시 상기 “ ④선정 제외대상” 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

지원대상으로 선정시

※ 선정 후 사업운영 전 과정(교부/집행/정산 등) '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시스템(보탭e)' 통해 수행

가.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가 시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분야의 공모사업에 중복 선정되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본 공모사업의 선정자격은 자동 상실됨

나.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시에서 안내하는 보조금 사용 의무교육(보조금 사용 길라잡이 교육 등)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참석대상자는 보조금 사용 의무교육의 경우, 해당 모임대표 또는 회계담당자임

- 의무교육 불참시 선정자격은 자동 상실됨

다.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인천시의 ‘보조금 사용 길라잡이’ 교육 이수 후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

- 「인천시 보조금사용 길라잡이」 주요내용
 - 보조금 사용 및 관리 방법, 사업완료(정산) 보고방법
- 본 지침을 어기고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함

라.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선정결과가 공고된 이후, 신청서와 동일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(거주지역 세무서에 신청)과 보조금관리 전용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함

마.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사업추진 기간 중 시 또는 시·군·구 담당 공무원의 중간 사업확인, 현장확인 등의 공모사업 관련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반드시 모임구성원(대표, 임원 등)이 관계공무원을 대면하여야 함

바.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보조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보조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함(입간판, 현수막, 리플렛 등)

※ 문의처

-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☎ 440-4118,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☎ 777-8200